

문서번호	입지총괄과-
보존기간	3년
보고일자	'16. 5. 24

입지총괄과장	지역경제정책관
신용민	박기영
협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호성	

기안 : 권병삼 사무관 권병삼

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고

- '16. 5. 24(화), 입지총괄과 권병삼 사무관(4455, 010-3304-2347) -

1. 개정 배경

- 기업활동의 편의 제고 및 행정업무처리의 신속성 향상을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

* 국조실 "한시적 규제완화('16.4월)", 협의간주제도 확대('16.4월)" 수용과제 후속조치

2. 개정 사항

가. 공장 내 부대시설로서 제품전시장 내 전시범위 확대(안 제2조제8호)

- 해당 공장 생산 제품뿐만 아니라, 이를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및 완제품까지 전시가 가능토록 개선

☞ 기업의 외부 고객 응대, 제품 홍보의 편의향상 기대

나. 협의간주 제도 도입(안 제31조제2항)

- 관리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시에는 산단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(협의 기간 20일),

- 이 때 20일 이내에 산단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하지 않을 경우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

☞ 행정의 신속성 향상을 기대

다. 분양 후 잔여 산업용지의 분할면적기준 완화(안 제39조의3제1항)

- (현행 제도) 산업단지 준공 후 최초 분양시에는 1,650㎡이하의 소필지 분양이 가능하나,
 -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잔여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,650㎡이하로 분할 불가능
- (문제점) 잔여 산업용지에 대한 분할면적 제한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이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,
 - 이로 인해 영세업체의 경우 필요이상의 필지를 분양받아 입주해야 하는 등 초기 비용부담 발생
- (개정안)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 후 잔여용지의 1,650㎡이하의 소필지 분할을 허용
 - ☞ 영세업체의 소필지 입주 수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3. 향후 계획

- 6월 내로 시행규칙 개정 완료 추진



Ministry of Trade,
Industry and Energy